

CONTACT



변호사 박영욱

T: 02,772,4422

E: younguk.park@leeko.com

공인회계사 류승원

T: 02,6386,7979

E: seungwon.ryu@leeko.com

변호사 조경준

T: 02,772,5977

E: kyoungiun.cho@leeko.com

가상자산 공시 등 최근 주요 회계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가상자산 주식공시 의무화 및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3. 7. 12. 자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 및 가상자산 주식공시 의무화 방안(이하 **가상자산 공시 등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2013. 7. 17. 자로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이하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내어 놓는 등 주요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들은 회사의 가상자산 주식 공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른 회계부정 조사 수행 업무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업에서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분들은 금번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회사에 영향을 주는 변동 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공시 등 개선방안

■ 가상자산 주식 공시 의무화

회계기준위원회는 2023. 7. 7. 자로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부분에 하나의 문단이 추가되고, 여기에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공개초안은 공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회계공시 측면에서의 가상자산의 정의는 2023. 7. 18. 자로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에 따른 정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에 대하여도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공표

증권선물위원회가 금번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 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일종의 회계분야의 유권해석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해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재 적용 중인 기업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처리방향을 시장에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 중 (i)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 사용, (ii) 암호화(cryptography)를 통해 보안, (iii) 대체가 가능(fungible)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적 증표를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보유자, 가상자산 사업자 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지침을 안내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사례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9. 12월부터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서는 그 간 실무계에서 제기되어 온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회계부정의 정의 명확화 등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에 경영진, 지배기구 이외에도 종업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독립성 요건 마련

종전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고양식(예시)의 마련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시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내부감사기구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예시)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공시 등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개정(안) 및 감독지침(안)을 최종 확정된 후 금년 10월 ~ 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고,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은 금번 개정에 반영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가상자산 공시 등 개선방안 및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은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회계부정 조사 제도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회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분들은 금번 발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에도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회계감리대응팀은 최근까지도 중요한 감리 지문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바 있으며, 변화하는 회계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